

## 섹션 504 비 차별 조항 공지

### 규정 안내문

뉴욕시 교육청(DOE)에서는 1973년 제정된 재활법 섹션 504(섹션504)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오직 장애를 이유로 교육청에서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당하거나 소외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당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비밀보장 권리는 존중될 것입니다.

교육감 규정 [A-710](#)에서는 섹션 504에서 정의한 장애를 가졌으나 자격이 있는 교육청 학교 및 프로그램 재학생, 그리고 교육청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불만제기 절차를 포함한 교육청 규정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학생을 위한 교육청 프로그램과 활동 또는 비교육청 특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504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거나 [504Questions@schools.nyc.gov](mailto:504Questions@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규정 [A-830](#)에서는 직원, 학부모, 학생 및 기타 교육청 대상 사업자, 교육청 시설 이용자, 또는 교육청과 기타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만제기 절차를 포함한 교육청 차별 방지 규정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섹션 504 권리 또는 절차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학부모:

Section 504 Program Manager(섹션 504 프로그램 매니저)  
Office of School Health(학교 보건 담당실)  
110 William Street, 15th Floor  
New York, NY 10038  
(212) 287-0354  
[504Questions@schools.nyc.gov](mailto:504Questions@schools.nyc.gov)

외부 관련 단체: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미국 연방 교육부 시민 권리 담당실)  
32 Old Slip, 26th Floor  
New York, NY 10005-2500  
(646) 428-3900  
<http://www.ed.gov/>

2022년 11월 수정